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김호중 소유물건(2025타경62334)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문병식

감정평가서번호: H50313-202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호수감정평가사사무소

HOSU APPRAISAL & CONSULTING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인혜 (인)

감정평가액	이십오억육천오백육십육만팔천원정(₩2,565,668,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문병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호중 (2025타경6233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24	2025.03.21 ~ 2025.03.24	2025.03.26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895	토지	4,895	-	2,565,668,000
		이	하	여	백	
	합계					₩2,565,66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영태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2025타경62334)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대상물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100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를 기준하였음.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실시기간

(1)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03.24.임.

(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조사내용

대상물건의 실지조사는 2025.03.21. ~ 2025.03.24.에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공부상 면적, 이용상황 등과 현황의 일치여부 및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5. 기타 감정평가 관련 사항

-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등에 근거하였음.
- 대상물건은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도,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위치 확인하였는 바 정확한 지적경계는 경계 측량 등을 통하여 확인을 요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대상물건 기호 (1)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현황 이용상황을 고려하되 지적도면에 의한 개략적인 면적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기호 (1) 일부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철거 및 운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기호 (1) 일부 및 기호 (2)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은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기호 (3)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근 토지평가 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요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용도지역	202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원/m ²)	비고
1	영태리 90-11	공장용지	3,782	계획관리	369,800	-
2	영태리 90-12	임야	456	계획관리	90,100	-
3	영태리 90-5	도로	657	계획관리	35,900	-

III.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감정평가의 방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

(1)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이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 공시지가 (원/㎡)
A	영태리 769-2	1,272	대	공업용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완경사	481,600
B	영태리 산16-7	5,318	임야	자연림	계획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90,600

(2)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표준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비 고
계획관리	0.383	경기도 파주시 (25.01.01~25.03.24) (계획관리) 2025.01.01 ~ 2025.02.28 : 0.256 2025.02.01 ~ 2025.02.28 : 0.148 $(1 + 0.00256) * (1 + 0.00148 * 24/28)$ = 1.00383

※ 기준시점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 최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 연장 적용함.

(3)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개별요인 비교

가. 개별요인 비교항목

(가) 공업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도심 및 시장과의 접근성	도심과의 접근성
		판매 및 원료구입시장과의 접근성
		인력수급의 난이도
	교통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철도, 간선도로, IC, 공항, 항만 등과의 접근성
물류시설 등과의 접근성	물류시설, 제품 및 원재료의 적치장 등과의 접근성	
환경조건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기반시설 (동력자원, 공업용수, 공장배수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규제(거래 및 업종의 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임야지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임도의 상태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접근조건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임목의 반출 용이성	임목 반출의 용이성 및 시장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의 양부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방위
		형상
	고저, 표고 등	고저 (경사지 등)
		표고
	토지이용상황	경사의 위치 및 굴곡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임상 등	임상, 조림, 자연림, 수종, 수령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및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기타규제(고압선, 분묘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개별요인 비교

기호	비교 표준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1	A	0.93	0.98	1.00	0.83	1.00	1.00	0.756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포장 등), 접근조건(도심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면적,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2	B	1.00	1.00	1.00	0.80	1.00	1.00	0.800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3	A	0.93	0.98	1.00	0.83	1.00	0.33	0.249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포장 등), 접근조건(도심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형상, 면적, 이용상황 등),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5)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 및 대법원판례(98두6067, 92누16300 등) 등의 취지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및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나. 가격조사자료

(가) 인근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등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1	영태리 **_**	계획관리 공장용지	2024.05.24	법원경매	734,000
2	영태리 **_*	계획관리 공장용지	2022.05.25	담보	68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지 번	용도지역 지목 등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3	위전리 ***_*	계획관리 임야	2024.10.21	법원경매	201,000
4	영태리 산**_*	계획관리 임야	2023.06.30	담보	145,000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나) 인근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등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영태리 ***_** 외	계획관리 대 외	2,250,000,000 원 (@ 788,920원/㎡)	2024.01.12. -	2,852㎡ -	-
#2	영태리 ***_*	계획관리 공장용지	2,179,000,000 원 (@ 723,208원/㎡)	2023.03.14. 1992.09.02	2,332㎡ 1,368㎡	-
#3	영태리 산**_**	계획관리 임야	970,000,000 원 (@ 180,767원/㎡)	2024.12.27. -	5,366㎡ -	-
#4	영태리 산**_*	계획관리 임야	500,000,000 원 (@ 151,285원/㎡)	2024.11.28. -	3,305㎡ -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개요 및 산식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평가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함.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평가사례기준 표준지가격 (사례단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표준지공시지가 x 시점수정)}}$$

(나) 비교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중에서 가격수준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며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사례 #1], [평가사례 #3]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각각 선정함.

기호	소재지 지번	용도지역 지목 등	기준시점	평가목적	토지단가 (원/㎡)
1	영태리 **_**	계획관리 공장용지	2024.05.24	법원경매	734,000
3	위전리 ***_*	계획관리 임야	2024.10.21	법원경매	201,000

(다) 보정치 산정

① 비교표준지 A

구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보정치 결정
사례 1 기준 표준지 A 단가	734,000	1.01357	1.000	1.113	828,028	1.713	1.710
기준시점의 표준지 A 단가	481,600	1.00383	-	-	483,445		

- 시점수정 : 2024.05.24. ~ 2025.03.24., 경기도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적용, 1.357%
- 지역요인 : 평가사례(1)과 비교표준지(A)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 개별요인 : 평가사례(1) 대비 비교표준지(A)는 가로조건(가로의 포장 등), 접근조건(도심과의 접근성 등), 획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지조건(경사, 형상 등)에서 우세함.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1.07	1.02	1.00	1.02	1.00	1.00	1.113

② 비교표준지 B

구분	사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보정치 결정
사례 3 기준 표준지 B 단가	201,000	1.00668	1.000	0.900	182,108	2.002	2.000
기준시점의 표준지 B 단가	90,600	1.00383	-	-	90,947		

- 시점수정 : 2024.10.21. ~ 2025.03.24., 경기도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적용, 0.668%
- 지역요인 : 평가사례(3)과 비교표준지(B)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 대등함.
- 개별요인 : 평가사례(3) 대비 비교표준지(B)는 가로조건(접근도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0.90	1.00	1.00	1.00	1.00	1.00	0.900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

구분	비교표준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일련번호	공시지가 (원/㎡)							
1	A	481,600	1.00383	1.000	0.756	1.710	624,978	625,000	-
2	B	90,600	1.00383	1.000	0.800	2.000	145,515	146,000	-
3	A	481,600	1.00383	1.000	0.249	1.710	205,846	20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1) 비교거래사례 선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1], [거래사례 #3]을 비교거래사례로 각각 선정함.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등	거래가액 (토지단가)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1	영태리 ***-**-** 외	계획관리 대 외	2,250,000,000 원 (@ 788,920원/㎡)	2024.01.12. -	2,852㎡ -	-
#3	영태리 산**-**	계획관리 임야	970,000,000 원 (@ 180,767원/㎡)	2024.12.27. -	5,366㎡ -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에 관한 의견	사정보정치
비교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3)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로서 비교거래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비 고
#1 : 계획관리	2.030	경기도 파주시 (24.01.12~25.03.24) (계획관리)
		2024.01.01 ~ 2024.01.31 : 0.095 2024.02.01 ~ 2024.02.29 : 0.153 2024.03.01 ~ 2024.03.31 : 0.164 2024.04.01 ~ 2024.04.30 : 0.178 2024.05.01 ~ 2024.05.31 : 0.143 2024.06.01 ~ 2024.06.30 : 0.131 2024.07.01 ~ 2024.07.31 : 0.151 2024.08.01 ~ 2024.08.31 : 0.120 2024.09.01 ~ 2024.09.30 : 0.164 2024.10.01 ~ 2024.10.31 : 0.124 2024.11.01 ~ 2024.11.30 : 0.121 2024.12.01 ~ 2024.12.31 : 0.118 2025.01.01 ~ 2025.02.28 : 0.256 2025.02.01 ~ 2025.02.28 : 0.148 $(1 + 0.00095 * 20/31) * (1 + 0.00153) * (1 + 0.00164) * (1 + 0.00178) * (1 + 0.00143) * (1 + 0.00131) * (1 + 0.00151) * (1 + 0.00120) * (1 + 0.00164) * (1 + 0.00124) * (1 + 0.00121) * (1 + 0.00118) * (1 + 0.00256) * (1 + 0.00148 * 24/28)$ ≒ 1.020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	비 고
#3 : 계획관리	0.402	경기도 파주시 (24.12.27~25.03.24) (계획관리) 2024.12.01 ~ 2024.12.31 : 0.118 2025.01.01 ~ 2025.02.28 : 0.256 2025.02.01 ~ 2025.02.28 : 0.148 $(1 + 0.00118 * 5/31) * (1 + 0.00256) * (1 + 0.00148 * 24/28)$ = 1.00402

(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	지역요인 비교치
대상물건은 비교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5) 개별요인 비교

기호	거래 사례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격차율
1	#1	0.93	1.00	1.00	0.83	1.00	1.00	0.772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포장 등), 획지조건(형상, 면적, 이용상황 등)에서 열세함.						
2	#3	1.00	1.00	1.00	0.80	1.00	1.00	0.800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3	#1	0.93	1.00	1.00	0.83	1.00	0.33	0.254
		대상물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포장 등), 획지조건(형상, 면적, 이용상황 등), 기타조건(도로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구분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시산가액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비고
	일련 번호	토지단가 (원/m ²)							
1	#1	788,920	1.000	1.02030	1.000	0.772	621,410	621,000	-
2	#3	180,767	1.000	1.00402	1.000	0.800	145,195	145,000	-
3	#1	788,920	1.000	1.02030	1.000	0.254	204,454	204,000	-

3.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1) 토지 시산가액 검토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m ²)	거래사례비교법 (원/m ²)	결정단가(원/m ²)	비고
1	625,000	621,000	625,000	-
2	146,000	145,000	146,000	-
3	206,000	204,000	206,000	-

(2)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객관성·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으로 평가단가를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토지면적(m ²)	적용단가(원/m ²)	감정평가액(원)	비고
1	3,782	625,000	2,363,750,000	-
2	456	146,000	66,576,000	-
3	657	206,000	135,342,000	-

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상기의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의 가격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아래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감정평가액	2,565,668,000 원
-------	-----------------

2. 기타 참고사항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90-11	공장용지	계획관리지역	3,782	3,782	625,000	2,363,750,000	일부 현황 도로 감안
2	동소	90-12	임야	계획관리지역	456	456	146,000	66,576,000	
3	동소	90-5	도로	계획관리지역	657	657	206,000	135,342,000	현황 도로등
합 계								₩2,565,668,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1미터 위임(11.12.0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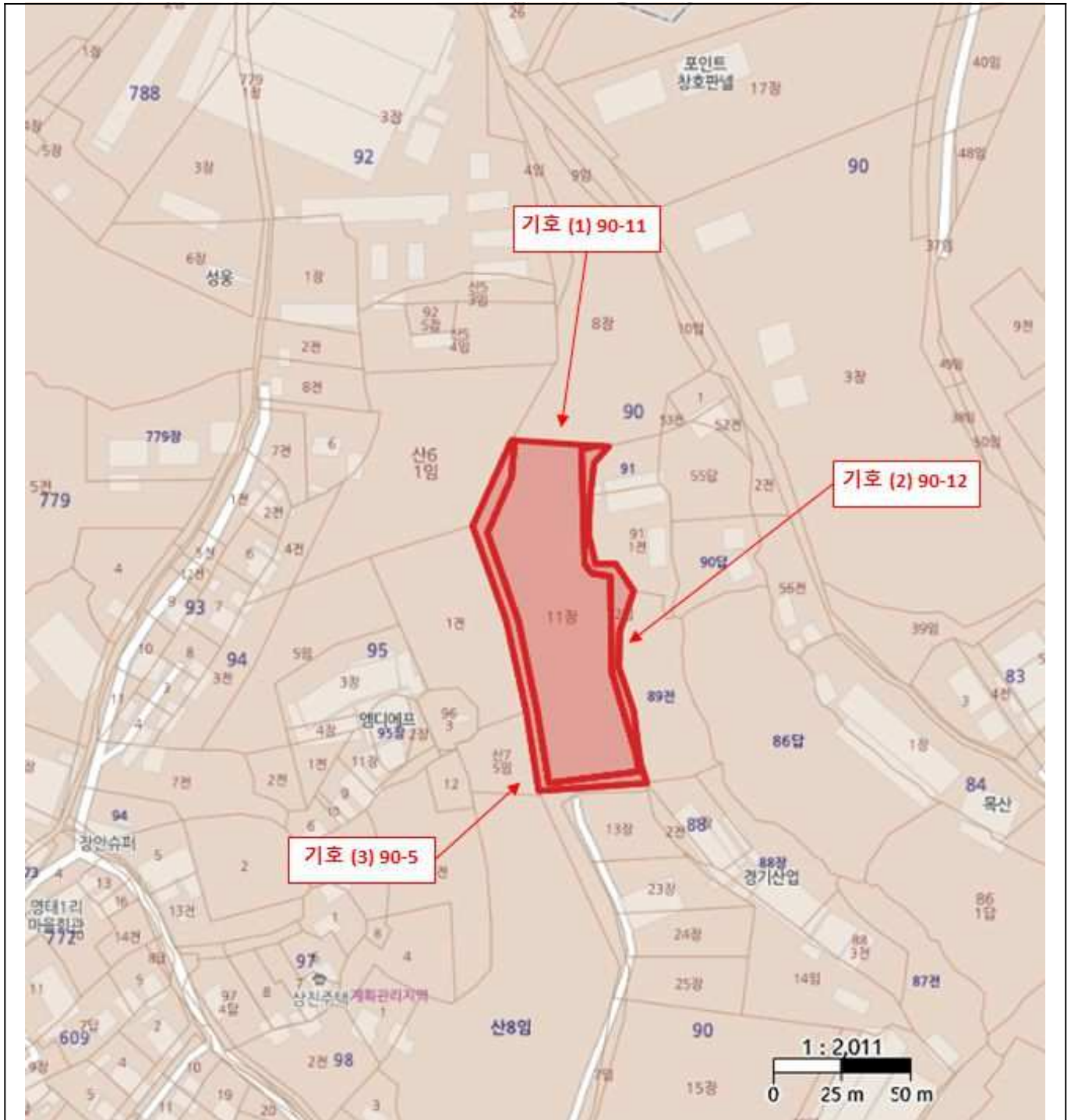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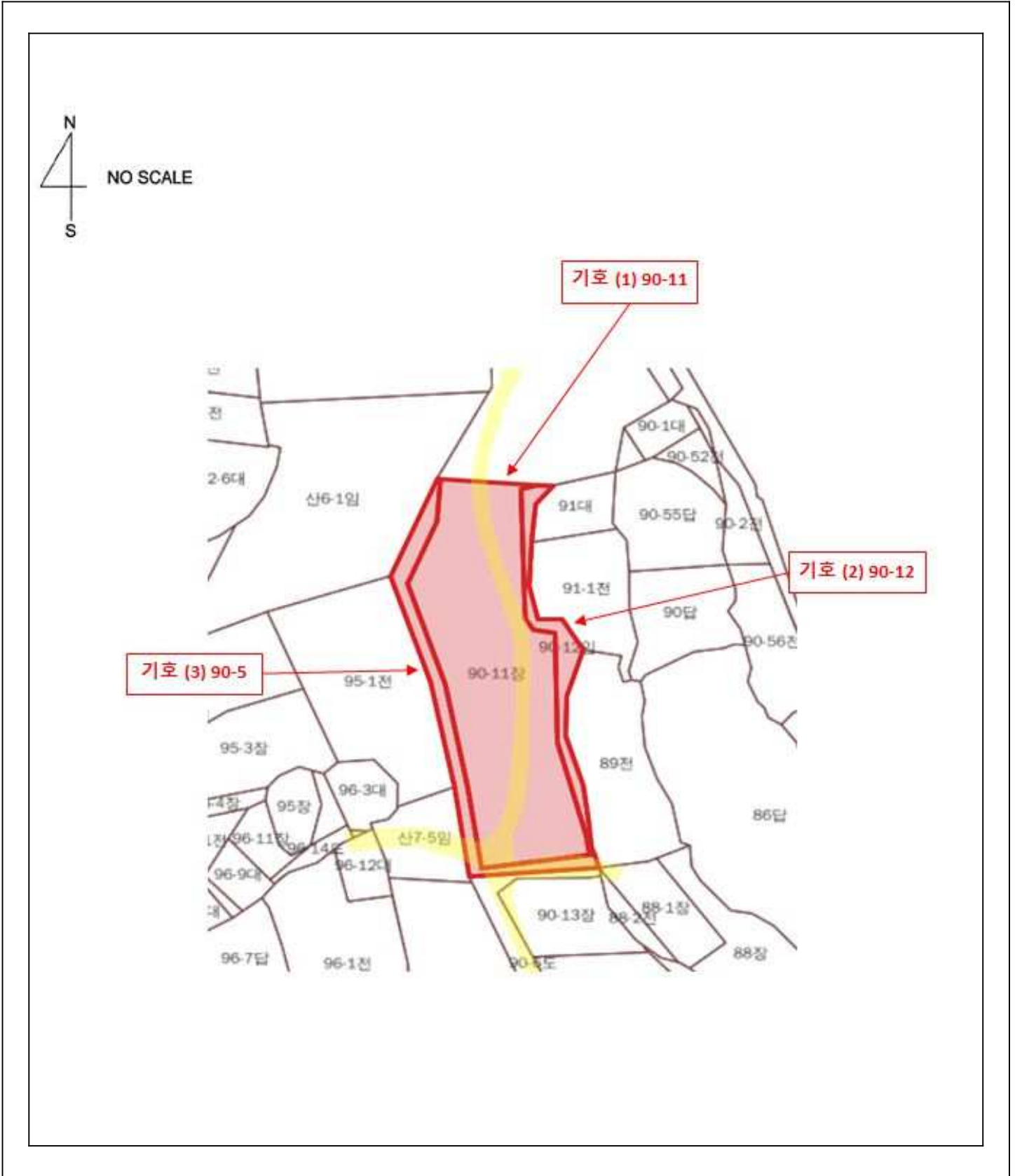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영태리 90-11 외 2필지



지 적 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전경



기호 (1), (2)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 (1) 전경 및 현황 도로 부분



기호 (1) 전경

사 진 용 지



기호 (2) 전경



기호 (3) 전경